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선임자) 안내

(Ver 25.1)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8조(안전교육)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 안내	과정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 교육 						
	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관서에 선임 신고된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붙임 1참조), 선·해임 안내(붙임 2참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관련 근거 : 법 제28조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사람 						
	교육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교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관련 근거 :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및 관련 별표 24 제78조(안전교육) 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 별표24(선임 후 6개월 이내, 2년마다 1회) </div>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교육과정</th> <th style="width: 30%;">교육장소(형태)</th> <th style="width: 4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위험물안전관리자 (혼용교육과정)</td> <td>온라인 학습(사이버)</td> <td rowspan="2">사이버교육 사전 수수료 후,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수수료</td> </tr> <tr> <td>안전원 교육장(집합)</td> </tr> </tbody> </table>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혼용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 미 수수료자 집합교육 참석불가</p>	교육과정	교육장소(형태)	비고	위험물안전관리자 (혼용교육과정)	온라인 학습(사이버)	사이버교육 사전 수수료 후,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수수료	안전원 교육장(집합)
교육과정	교육장소(형태)	비고						
위험물안전관리자 (혼용교육과정)	온라인 학습(사이버)	사이버교육 사전 수수료 후,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수수료						
	안전원 교육장(집합)							

교육 시간	<table border="1"> <tr> <th>교육과정</th> <th>사이버교육</th> <th>집합교육</th> </tr> <tr> <td>혼용교육</td> <td>4시간</td> <td>4시간</td> </tr> </table>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혼용교육	4시간	4시간						
	교육과정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혼용교육	4시간	4시간											
<p>※ 결강기준 : 집합교육 25분 이상 자리비움 시 결강 * 교육시작 25분 이후 교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p>													
교육 흐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안내문 수령 후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하여 교육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안내문 우편발송(교육 이수기한 해당분기의 1개월 전 발송) - 안전원 홈페이지 실무교육신청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시 신청(사전접수)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교육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실무교육 일정참고 												
교육 참가시 구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신분증, <u>선임된</u>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 • 사이버교육 : 해당사항 없음 ※ 교육전 소방관서 선임신고 필수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업종별) 교육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육과정(업종)</th> <th>제주소, 취급소, 대리자(교육희망자)</th> <th>저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교육대상</td> <td>위험물제주소, 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td> <td>위험물저장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td> </tr> <tr> <td>교육내용(집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형성평가) • 위험물 사고사례 등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저장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 • 위험물저장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형성평가) • 위험물 사고사례 등 </td> </tr> <tr> <td>교육내용(사이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성상 •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I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II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성상 •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 위험물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I • 위험물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II </td> </tr> </tbody> </table> <p>※ 상기 교육과정은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교육신청자의 의사(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선임된 업종 무관)</p>	교육과정(업종)	제주소, 취급소, 대리자(교육희망자)	저장소	교육대상	위험물제주소, 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위험물저장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교육내용(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형성평가) • 위험물 사고사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저장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 • 위험물저장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형성평가) • 위험물 사고사례 등 	교육내용(사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성상 •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I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성상 •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 위험물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I • 위험물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II
교육과정(업종)	제주소, 취급소, 대리자(교육희망자)	저장소											
교육대상	위험물제주소, 취급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위험물저장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교육내용(집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형성평가) • 위험물 사고사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저장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 • 위험물저장소 시설기준 및 점검방법(형성평가) • 위험물 사고사례 등 											
교육내용(사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성상 •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I • 위험물제주소·취급소 일반점검 요령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성상 •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 위험물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I • 위험물저장소 일반점검 요령 II 											
실무교육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000원 ※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63조(실무교육의 수수료) ★ 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실무 교육 수수료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교육수수료증은 교육수료 후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 미수료자 행정 처리

-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

관련 근거 : 법 제28조제4항

제28조(안전교육)

④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인터넷 실무교육 수수료 결제방법 안내

❖ 신용카드 결제

```

    graph LR
      A[교육일자 선택] --> B[교육신청자 정보확인]
      B --> C[결제하기 (신용카드)]
      C --> D[교육신청 완료]
    
```

❖ 무통장 계좌 입금

```

    graph LR
      A[교육일자 선택] --> B[교육신청자 정보확인]
      B --> C[무통장계좌 할 당]
      C --> D[교육수수료 입금]
      D --> E[교육신청 완료]
    
```

※ 주의사항

- 입금기한 : 교육신청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후 오후 6시까지 (기한 내 미입금 시 교육 접수내역이 취소되어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 은행 ATM CD기를 이용한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사용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과오납이나 분할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하신 후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fsi.or.kr>접속>소방안전교육>실무교육>실무교육 신청 내역)
-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후 환불시 카드사의 정산처리에 따라 취소되는 시점이 2~3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육수수료 환불

-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

환불기준	환불금액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	전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	전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후 신청	없음

- 환불시 주의사항
 -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교육 당일에는 교육신청·변경·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신청일 다음날부터 가능)

지부별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 [붙임.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근거 :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저장소	1. 옥내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옥외탱크 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 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 저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취급소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판매 취급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비고 :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 [붙임.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p>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근거</p>	<p>▣ 선임근거 : 법 제15조</p> <p>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p> <p>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위험물 안전관리자 신고절차</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57 1279 504 1339">누 가</td> <td data-bbox="504 1279 1449 1339">• 제조소등의 관계인</td> </tr> <tr> <td data-bbox="357 1339 504 1400">누구에게</td> <td data-bbox="504 1339 1449 1400">• 관할 소방서장</td> </tr> <tr> <td data-bbox="357 1400 504 1503">선임 기한 및 신고 기한</td> <td data-bbox="504 1400 1449 1503">•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법 제15조1항2호 내지 3호)</td> </tr> <tr> <td data-bbox="357 1503 504 2047"> <p>관련서류</p> <p>※시행규칙 제53조</p> </td> <td data-bbox="504 1503 1449 2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동의 또는 자격증 사본 제출) <p>※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p> </td> </tr> </table>	누 가	• 제조소등의 관계인	누구에게	• 관할 소방서장	선임 기한 및 신고 기한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법 제15조1항2호 내지 3호)	<p>관련서류</p> <p>※시행규칙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동의 또는 자격증 사본 제출) <p>※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p>
누 가	• 제조소등의 관계인								
누구에게	• 관할 소방서장								
선임 기한 및 신고 기한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법 제15조1항2호 내지 3호)								
<p>관련서류</p> <p>※시행규칙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관리자 선임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 •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행정정보 동의 또는 자격증 사본 제출) <p>※ 추가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로 반드시 문의바랍니다.</p>								

<p>직무대행자 지정</p>	<p>▣ 위험물 대리자 지정[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p>▣ 위험물 대리자 자격요건[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p> <p>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삭제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p>벌칙조항</p>	<p>○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법36조제6항)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p> <p>○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법39조제5항) : 200만원 과태료</p>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1.27.>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치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소등의 구분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년	월	일	설치허가번호 제 호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선임된 안전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직무상의 지위			
	자격의 종류			
	자격증 번호 및 취득연월일		취급위험물의 유별	
	선임연월일	년	월	일
해임된 (퇴직한) 안전 관리자	성명		자격증 종류 및 번호	
	주소		해임(퇴직)연월일	
	해임(퇴직) 사유		년	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소방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제3쪽에 기재한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적고,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성명란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주소란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둘 이상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2쪽의 서식에 따라 제조소등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중복하여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 월 일 제 호		
설치장소 및 명칭				
보조자 성명 및 생년월일				
위험물 현황	유별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p>신청인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제5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만 해당됩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제78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됩니다) 4.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만 해당됩니다)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자만 해당됩니다)</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